

「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11월 1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(2021년 12월 1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)

가. 제안이유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실시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우리 군 자치 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국가유공자 등의 시설 관람료 감면 규정 신설(제14조제5항, 별표 2)
 - 전액 감면: 장애인, 6세 이하 어린이, 65세 이상의 사람, 수급자
 - 100분의 50 감면: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등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나 표현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진)

○ 본 조례안은

평창군 평창읍 문화예술길 51에 위치한 “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”의 ‘관람료’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.

○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14조에서는 제5항을 신설하여 별표2로 관람료 감면을 규정하고

별표 2에서는 전액 감면을 장애인, 6세 이하 어린이, 65세 이상의 사람, 수급자로 100분의 50 감면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등, 한부모가족으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각 호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별표와”를 “별표 1과”로 한다.

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군수는 별표 2에 따른 대상자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5조의 제목 “(사용자의 설비)”를 “(사용자의 설비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

제3항 전단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사용자의 변상책임)”을 “(사용자의 책임)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4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조에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 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감면대상자(제14조제5항 관련)

I. 전액 감면

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(장애 등급 1~3급에 한함)
2.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II. 100분의 50 감면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
 - 가.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 - 나.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 - 다.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 - 나.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 - 다.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
 - 가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
- 나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
- 가. 5·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
- 나.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5·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- 다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
- 가.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
- 나.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.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.
- 다.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·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
7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
- 가. 의상자. 다만,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.
- 나. 의사자유족 중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. 다만,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.
- 다.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8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
- 가. 등록포로
- 나.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
9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
10.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